

2019년도 제27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자 : 2019. 11. 27.(수요일)
- 방 법 : 온라인심의
- 대 상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 심의위원 : 김경숙(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II. 회의안건 및 결과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회의안건: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58건(안건번호 제2019-156400호~제2019-156459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함

Ⅲ. 주요내용

- A 위원 : 본 심의안건은 ○○○○○○○○, ☆☆☆☆☆☆☆, △△△△ 등에서 복제전송된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이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로서 저작권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저작물로서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유포가 뚜렷하여 합법저작물 시장을 위축시켜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을 파괴하는 동시에 저작권자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또는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 가결 의견임

- B 위원 : 상기 안건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공중의 이용에 저작물을 제공하고 있어 저작권법 133의3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므로 가결함
다만 이미 전송중단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해야할 것임

- C 위원 : 본 심의에 상정된 60안건은 158개 영상 저작물의 불법 저작물을 인터넷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전송하는 게시물에 대한 것이다. 채증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볼 때, 공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저작권 법에 의해 시정 조치 하는 것이 적절하다.

- D 위원 : 본 심의 안건 대상물들은 현재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유령을 잡아라(2019)” 등 방송물과 “창단! 짐승의 길” 등 애니메이션들로서 웹하드들에 업로드되어 있는 복제물들임. 이들 영상물들을 게시한 자들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복제 전송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저

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여짐. 이는 저작권자들이 얻어야 할 경제적 수익을 감소시킴으로 인해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들을 신속히 삭제시킬 필요성이 있어 보임. 이들 불법 복제물들은 제103조에 따른 저작권자들의 복제 전송 중단 요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저작권보호원은 제133조의3에 근거하여 불법복제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 전송 중단 및 삭제의 시정권고를 할 수 있음. 다만, 이미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이 타당함.

2019년 제27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1. 27.

분과위원장 김경숙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최현용